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7 문팔갑의원외 3

나. 회 부 일 자 : 2000. 4. 27

다. 상 정 일 자 : 2000. 5. 1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 중 구 의원

나. 개정이유

o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o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안 제2조)

o "의원당해년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 찬 주)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o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중 "의원당해년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회기수당" - 회의수당 - -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1. - 시 · 도의회의원 회기수당 - - - - - - - - - 2. - - - - - - - - - - - - - - - - - 시 · 도의회의원 회기수당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